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22.4.21.시행)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중복 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(‘사용·수익허가’ → ‘사용허가’)
(안 제15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30조)
-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의2, 제6조, 제12조, 제13조, 제25조, 제27조, 제30조, 제31조, 제36조, 제7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(“이하 공유재산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조례 위임사항 신설,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,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에 관한사항으로 「공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, 심의사항 등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히 하고 심의생략 가능대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.
 - 안 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「공유재산법」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15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30조는 「공유재산법」 용어 개정에 따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‘사용·수익허가’를 ‘사용허가’로 법령에

맞게 고침.

- 그 밖의 개정 조항(안 제1조의2, 제6조, 제12조, 제13조, 제25조, 제27조, 제30조, 제31조, 제36조, 제73조)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제명, 조문 및 조문번호 변경, 띄어쓰기 교정, 약칭 사용 등을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으며, 개정 전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하여 재산 취득·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과 토지 면적을 정함.
- 그 외 개정 조항은 상위법령과 타 법령 개정 관련 및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1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중복 규정 삭제 (안 제3조, 제4조)
- 나.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신설 (안 제11조)
- 다.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)
(안 제15조, 제18조 ~ 제22조, 제30조)
- 라. 그 밖의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10. 14. ~ 11. 2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중 “**관하여**”를 “**관해서**”로, “**있는 경우 외에는**”을 “**없으면**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제7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**”를 “**제10조의3제1항제1호·제2호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“구”**”를 “**“영등포구”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공유재산심의회**”를 “**심의회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토지**”를 “**토지의 취득·처분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이하**”를 “**미만**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**”를 “**영등포구**”로, “**구 홈페이지**”를 “**영등포구 홈페이지**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**공유재산 관리계획**)”을 “(**공유재산관리계획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**법 제10조**”를 “**법 제10조의2**”로, “**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**”을 “**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**공유재산 관리계획**”을 각각 “**공유재산관리계획**”으로 한다.

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제12조의 제목 “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”를 “(공유 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)”을 “(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 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공유재산 관리계획서”를 “공유재산 관리계획서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무상사용·수익허가대상”을 “무상사용허가대상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”을 “(사용허가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“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대상)”을 “(수익의 방법 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을 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구 내”를 “영등포구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구 내”를 “영등포구 내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)”를 “(사용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”를 “(사용허가부의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 허가부”를 “사용허가부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

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사용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4항제4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개발사업구역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”으로,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”를 “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4항 본문 중 “관리하되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”를 “관리한다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8호 중 “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”을 “재개발사업 시행을”로,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주택재개발사업의”를 “재개발사업의”로, “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”를 “재개발사업 시행인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“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”을 “재개발사업 시행을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주택재개발사업의”를 “재개발사업의”로, “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”를 “재개발사업 시행인가”으로, “같은 법 제10조”를 “같은 법 제129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6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

의3제3항”으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7조제1항 중 “제5조 제2항”을 “제5조제2항”으로, “기부심사위원회의(이하 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7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각각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94조 후단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<u>관하여</u> 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<u>있는 경우 외에는</u>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 ----- <u>관해서</u> ----- ---- <u>없으면</u> ----- -----.
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각각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 <u>영</u> ”이라 한다) <u>제7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</u>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10 <u>조의3제1항제1호·제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재산관리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 <u>구</u> ”라 한다) 소속 직원	1. ----- ----- <u>“영등포구”</u>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삭제	
⑨ <u>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⑩ · ⑪ (생략)	⑩ · ⑪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
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한다.

1. 2. (생략)

3.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
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
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
사항,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
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
경우는 예외로 한다.

4. (생략)
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
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
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
못하는 토지

3.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
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
의 취득·처분

4. (생략)

제6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
의 공개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서울특
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
다)에서 발행하는 구보 및 구
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심의회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토지의 취득·처분

3. -----
----- 미만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
의 공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영등포
구 -----
----- 영

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③ (생 략)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
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
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
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
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
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
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
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
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
계획(변경계획을 포함한다)은
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작성한
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
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
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
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

<신 설>

등포구 홈페이지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--
---- 법 제10조의2 -----

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
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
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
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
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---. 공
유재산관리계획-----.

② ----- 공유재산관리계
획-----

---. -----

-----.

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
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
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
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이상인
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

	<u>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</u> <u>면적 이상인 토지</u>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 <u>곱미터</u>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 <u>곱미터</u>
제12조(<u>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</u> <u>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</u>) ① · ② (생 략)	제12조(<u>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</u> <u>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<u>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</u> <u>방법</u>) 제11조에 따른 <u>공유재산</u> <u>관리계획서</u> 의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.	제13조(<u>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</u> <u>방법</u>) ----- <u>공유재산</u> <u>관리계획서</u> ----- -----.
제15조(<u>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</u>)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<u>무상사용 · 수익허가</u> <u>대상</u>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며, 토지는 유상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15조(<u>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무상사용허가대상</u> 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<u>사용 · 수익허가의 제한</u>) ① (생 략)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<u>사용 · 수익허가</u> 를 해서는 아니 된다. 1. · 2. (생 략)	제18조(<u>사용허가의 제한</u>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 <u>사용허가</u>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대상) 영 제13조 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2.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
제19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
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7. (생략)

제20조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하

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-----

----- 사용허가-----

1. -----
----- 영등포구 내-----

2. -----
----- 영등포구 내 -----

제19조(사용허가) -----
-- 사용허가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용허가-----

6. 사용허가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사용허가부의 비치) -----

----- 사용허가부-----

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·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22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

---.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

----- 사
용허가-----
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사용허가-----

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--

----- 사용허가-----

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
1. ~ 3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

-----.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-----

----- 사용허가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-----
-----.

1. · 2. (생략)

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라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. 다만,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영등포구 수입으로 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·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관리한다. -----

-----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----- 재개발사업
시행을 -----
--- 구청장 -----
----- 재개발사업의 -----

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할 때

② 삭 제

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

④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

---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---

③ -----

-----.

5. -----
----- 재개발사업 시행을 -----
----- 구청장 -----
----- 재개발사업의 -----

-----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-----
----- 같은 법 제129조 -----

④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3제3항 -----

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
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
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
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
다.

제67조(기증품의 취득)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장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(이하 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73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
(생략)

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

--- 행정안전부장관

제67조(기증품의 취득) ① -----

-----제5

조제2항-----

----- 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기
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3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_____

-----감정평가법인등

